

부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17351 판결 [청구이의 및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5626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17351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20. 6. 3.

판결선고 2020. 7. 15.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21279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C는 2008. 10. 17.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E으로부터 26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2009. 4. 13. E과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변제기를 2009. 4. 22., 이자를 연 48%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C의 E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20. E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양수하였고, E의 위임에 따라 원고와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9. 원고와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21279호로 E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2.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7808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F, 중소기업은행으로 하고 청구채권과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별지 기재와

같이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3.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2019. 9. 11. 2,759,580원, 2019. 10. 10. 1,756,320원을 각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이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이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이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이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또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E에 대하여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2009. 4. 22.이고, 위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21279 사건의 소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4. 19.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소 제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테니 채무액을 일부 감면해 달라는 말을 하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집행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8. 23. 발령되었고, 이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2019. 9. 11. 2,759,580원, 2019. 10. 10. 1,756,320원을 각 추심한 사실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원인채권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발령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미 소멸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추심금을 수령하여 추심금 합계 4,515,900원(= 2,759,580원 + 1,756,32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4,515,9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4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별지속락)

청 구 금 액

1. 원 금: 2,600,000원 - 부산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2019가소 21279호에 의한 원금

2. 지연손해금: 6,443,400원

(원금 2,600,000원에 대한 2009.4.23일 부터 2019.8.19일 까지 연 24%)

합 계 금: 9,043,400원

(부산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2019가소 21279호에 의한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총금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 9,043,400원정

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채권 중 아래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현재 및 강제 채권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원

다 음

*채권압류 및 추심할 순서

1) 압류되지 않은 예금 및 보험채권과 압류된 예금 및 보험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및 보험채권

2.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및 보험채권

2) 수종의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자유저축예금 2. 보통예금 3. 당좌예금 4. 저축성 예금 5. 정기예금 6. 정기적금

7. 월단예금 8. 신탁성 예금 9. 외환예금 10. 수익성 예금 11. 기타예금

3) 여러종류의 보험이 있을시에는 다음에 의거 압류 및 추심한다

1. 변액보험 2. 건강상해보험 3. 연금저축보험 4. 정기종신보험

5. 방카슈랑스보험 6. 기타모든보험

4) 가입하고 있는 모든보험의 보험금 및 약관대출금과 환급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한다

단, 민사집행법 246조 1항 7호, 8호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보험금은 제외한다.

제3채무자별 청구 금액

제3채무자1 주식회사 [] 에 대하여 (금 4,521,700원정)

제3채무자2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금 4,521,700원정)

채 무 자

[] ([])

(이 상)